

SE♥UL M!SOUL

주요 업무 보고

2024. 8.

재무국

1 재산세 공동과세를 통한 자치구 재정 격차 해소

세제과장 : 서은경 ☎2133-3350 세제정책팀장 : 김형구 ☎3352 담당 : 서범하, 유민지 ☎3354

- ◆ 2008년부터 도입된 재산세 공동과세 제도에 따라 특별시분 재산세를 자치구에 균등 배분하여 자치구간 세수격차 해소 및 균형발전 도모

□ 재산세 공동과세 이전의 세수격차 해소 노력

- ① 담배소비세(시세)와 종합토지세(구세) 세목교환 추진 ('95년~04년)
 - 서울시 건의 정부입법 추진('95년) 및 제15대 국회 국민회의 김근태 의원('96년), 제16대 국회 민주당 이상수 의원('01년) 지방세법 개정안 발의
 - ➔ 재원감소 자치구 반대 및 여·야간 이해관계 상충으로 입법 실패
- ② 3개 시세(자동차세 등)와 자치구세인 재산세 세목교환 추진 ('05년)
 - 정부·여당, 3개 시세(자동차세, 주행세, 담배소비세)와 재산세 세목교환 재추진 발표('05.4월), 열린우리당 우원식 의원 지방세법 개정안 발의('05.11월)
 - ➔ 재산세의 높은 세수신장성에 따른 세수 역전현상 발생, 25개 자치구 반대

□ 재산세 공동과세 도입 추진 ('05년~'07년)

- 세목교환의 대안으로 자치구에서 재산세 과세 후 배분 방안 발의
 - '05. 12. 6. 한나라당 김충환 의원 지방세법 개정안 발의(공동과세 비율 50%)
 - '07. 2. 22. 정부·여당 세목교환 포기, 재산세 공동과세로 추진 합의
 - '07. 7. 3. 지방세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, 공포('07. 7.20.)
 - ※ 재산세 공동과세 50%, 배분방법은 조례로 정하되 정하지 않은 경우는 균등배분
- 지방세법 개정에 따른 서울특별시 시세 조례 개정 ('07.11.1.)
 - (개정내용) 특별시분 재산세 전액을 공동재산세 전출금으로 자치구에 균등 배분하여 교부하도록 개정
 - 시세 조례 개정안 입법예고('07. 8. 9. ~ 8.20.) 기간 중 자치구 의견 : 강남구의 '인구기준 배분 건의' 외에는 별도 의견 없음

□ 재산세 공동과세 개요

- (개념) 각 자치구의 재산세 50%*를 특별시분 재산세로 징수한 후, 전액을 25개 자치구에 균등 배분함으로써 자치구간 균형발전 도모('08년 도입)
 - ※ 재산세 중 특별시분 재산세 비율 : '08년 40%, '09년 45%, '10년 이후 50%
- (효과) 특별시분 재산세의 균등 배분액보다 부담액*이 많은 자치구의 재산세 재원이 적은 자치구로 이전되는 자치구 간 재정형평화 효과
 - * 강남구 특별시분 재산세 부담액 3,710억원 - 676억원(균등 배분액) = 3,034억원(재원 조정)

※ 제도 시행에 따른 자치구(강북·강남)의 재산세입 변화

(단위 : 억원, 배)

| 구 분 | 2024년 당초 재산세 (A) | 조정(공동과세 균등배분) | | | 증감액 (B-A) | 세수 격차 | |
|-----|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|-----------|-------|-----|
| | | 자치구분 재산세 (50%) | 특별시분 재산세 (50%) | 조정후 재산세 (B) | | 당초 | 조정후 |
| 강북구 | 283 | 141 | 676* | 818 | + 535 | 1.0 | 1.0 |
| 강남구 | 7,420 | 3,710 | 676* | 4,386 | △ 3,034 | 26.3 | 5.4 |

※ 특별시분 재산세 총액 16,909억원 ÷ 25개 자치구 = 676억원

※ 제도 시행에 따른 연도별 자치구(강북·강남) 세입격차 개선 효과

(단위 : 억원, 배)

| 구 분 | 2024년 | 2023년 | 2022년 | 2021년 | 2020년 | 2019년 | 2018년 | 2017년 | 2016년 |
|-------|--------|--------|--------|--------|--------|--------|--------|--------|--------|
| 금 액 | 16,909 | 16,797 | 19,035 | 17,376 | 15,352 | 13,600 | 11,838 | 10,799 | 10,120 |
| 개선효과 | 5.4배 | 5.5배 | 5.4배 | 5.3배 | 5.1배 | 5.0배 | 4.7배 | 4.6배 | 4.6배 |
| (당 초) | (26.3) | (25.9) | (26.3) | (25.9) | (21.9) | (20.1) | (17.7) | (16.7) | (16.4) |

※ 2023년 이전은 결산액, 2024년은 예산액 기준

※ 참고 : 공동과세 비율 상향(50%→60%)에 대한 자치구 의견

- '23. 11월 : 찬성 17개구, 반대 8개구(강남, 마포, 서초, 송파, 영등포, 용산, 중구, 강동)
- '22. 12월 : 찬성 16개구, 반대 9개구(강남, 마포, 서초, 송파, 영등포, 용산, 중구, 강동, 종로)
- '21. 1월 : 찬성 17개구, 반대 7개구(강남, 마포, 서초, 송파 등), 보류 1개구(강동)

붙임

재산세 공동과세 연도별 세입격차 (결산액 기준)

(단위 : 억원)

| 자치구명 | | 당 초 재산세 (A) | 조 정(공동과세 균등 배분) | | | 증감액 (B-A) | 세액대비 격차 | |
|-----------------|-----|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|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|---------|-----|
| | | | 자치구분 재산세(50%) | 특별시분 재산세 | 조정후 재산세(B) | | 당초 | 조정후 |
| '10년 | 강남구 | 3,412 | 1,706 | 329 | 2,033 | △1,379 | 16.7 | 4.7 |
| | 강북구 | 204 | 102 | | 431 | | | |
| '11년 | 강남구 | 3,418 | 1,709 | 336 | 2,045 | △1,373 | 16.6 | 4.6 |
| | 강북구 | 206 | 103 | | 440 | | | |
| '12년 | 강남구 | 3,443 | 1,721 | 349 | 2,069 | △1,374 | 16.0 | 4.5 |
| | 강북구 | 215 | 108 | | 457 | | | |
| '13년 | 강남구 | 3,287 | 1,643 | 342 | 1,985 | △1,302 | 15.2 | 4.4 |
| | 강북구 | 216 | 108 | | 450 | | | |
| '14년 | 강남구 | 3,446 | 1,723 | 359 | 2,081 | △1,365 | 15.2 | 4.4 |
| | 강북구 | 226 | 113 | | 472 | | | |
| '15년 | 강남구 | 3,702 | 1,851 | 378 | 2,228 | △1,474 | 15.9 | 4.5 |
| | 도봉구 | 233 | 116 | | 494 | | | |
| '16년 | 강남구 | 4,001 | 2,000 | 404 | 2,404 | △1,597 | 16.5 | 4.6 |
| | 강북구 | 243 | 122 | | 527 | | | |
| '17년 | 강남구 | 4,289 | 2,145 | 432 | 2,577 | △1,712 | 16.7 | 4.6 |
| | 강북구 | 257 | 129 | | 561 | | | |
| '18년 | 강남구 | 4,792 | 2,396 | 474 | 2,869 | △1,923 | 17.7 | 4.7 |
| | 강북구 | 271 | 136 | | 610 | | | |
| '19년 | 강남구 | 5,712 | 2,856 | 544 | 3,400 | △2,312 | 20.1 | 5.0 |
| | 강북구 | 284 | 142 | | 686 | | | |
| '20년 | 강남구 | 6,512 | 3,256 | 614 | 3,870 | △2,642 | 21.9 | 5.0 |
| | 강북구 | 298 | 149 | | 763 | | | |
| '21년 | 강남구 | 7,556 | 3,778 | 695 | 4,473 | △3,083 | 25.9 | 5.3 |
| | 강북구 | 292 | 146 | | 841 | | | |
| '22년 | 강남구 | 8,353 | 4,177 | 761 | 4,938 | △3,415 | 26.3 | 5.4 |
| | 강북구 | 318 | 159 | | 920 | | | |
| '23년 | 강남구 | 7,591 | 3,796 | 672 | 4,468 | △3,124 | 25.9 | 5.5 |
| | 강북구 | 294 | 147 | | 819 | | | |
| '24년 (예산액기준) | 강남구 | 7,420 | 3,710 | 676 | 4,386 | △3,034 | 26.3 | 5.4 |
| | 강북구 | 283 | 141 | | 818 | | | |

2 시세 징수교부금 운영 현황 및 직접징수 검토

세제과장 : 서은경 ☎2133-3350 세제정책팀장 : 김형구 ☎3352 담당 : 김종승 ☎3353
세무과장 : 배덕환 ☎2133-3380 세입총괄팀장 : 권선미 ☎3382 담당 : 노다지 ☎3390

- ◆ 지방세징수법에 의거 자치구에 위임하여 부과·징수한 시세의 징수비용을 보전하여 시세 징수율을 제고하고 직접징수하는 안에 대해 검토, 보고드릴

□ 시세 징수교부금 개요

- 개념 : 시세 부과·징수에 따른 징수비용 보전을 위한 법정 경비로 시세 징수액의 3%(법정교부율)를 자치구 교부
 - ※ (대상세목) 취득세, 레저세, 지역자원시설세, 주민세, 지방소득세, 재산세 도시지역분, 자동차세(소유분)
- 근거
 - 지방세기본법(제6조), 지방세징수법(제17조) 및 같은 법 시행령(제24조), 시세기본조례(제3조), 시세징수조례(제5조)
- 교부기준 : 징수금액 50% + 징수건수 50% ('10년 이전은 징수금액 100%)
 - ※ 지방세징수법 시행령(제24조제3항)에 따라 레저세는 건수 미반영
- 집행규모 : 5,690억원('23년 결산액 기준)

< 최근 5년간 시세 징수교부금 집행액 >

(단위 : 백만원)

| 구분 | 2019년 | 2020년 | 2021년 | 2022년 | 2023년 |
|---------------|------------|------------|------------|------------|------------|
| 교부대상 시세징수액 | 14,147,700 | 15,604,200 | 17,015,267 | 21,339,868 | 18,966,700 |
| 징수교부금 | 424,431 | 468,126 | 510,458 | 640,196 | 569,001 |

- ◆ 특별시·광역시세의 부과·징수 업무를 **기초단체에 위임하는 주된 이유**는 하위 기초단체가 지역주민과 근접해 있어 **납세자들이 지불하는 납세행정 비용이 낮기 때문**이며, 위임징수에 따른 **징수교부금은 광역과 기초 간 자원배분의 의미도 담고 있음** < 서울시 세무조직·인력운용 문제점과 개선방안 연구, 김필현, 2017 >

□ 추진현황

① 징수교부금 개선

- 교부기준 개선 연혁(징수금액 100% → 징수금액 50% + 징수건수 50%)
 - ('04.12월) 징수교부금 교부기준에 징수금액과 징수건수를 동일하게 반영하도록 개선하고, 지방세법시행령에 명문화 건의(市 세무과 → 행안부)
 - ('07. 7월) 지방세법령에서 징수교부금 지급의 법적근거만 마련하고, 세부 지급 기준은 조례로 정하도록 지방세법령 개정 건의(市 세제과 → 행안부)
 - ('10. 7월) (구)지방세법 시행령(제41조) 개정
 - ('10.12월) (구)시세기본조례 제정 시 교부기준에 징수건수 추가(제17조제2항)

② 직접징수 추진 경과

- ('98. 8월) 고건시장 공약사업으로 『서울특별시 지방세사무소』 설치 추진
➔ 조직권 및 인사권 회수 등의 문제로 자치구청장들의 반대에 따라 무산
- ('02~'03년) 민선3기 100대 과제 포함, 자치구청장들 반대로 미추진
- ('16. 2월) 시의회(행자위)에서 '시세 직접징수 효율성' 검토 제안
 - 조정교부금 증액 요구, 인력 및 자원감소에 따른 자치구 반발 우려 등으로 미추진
- ('20. 6월) 시의회(강동길의원) 시세 직접징수 제안
 - 자치구의 반대, 접근성 저하 등에 따른 시민 불편초래 문제 등으로 미추진

□ 시세 직접징수에 대한 검토의견

- 지방자치 원칙 측면에서 과세권자가 직접 징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할 수 있으나, 징수교부금 규모가 큰 자치구(강남,서초 등)의 격렬한 반발 초래
- 자치구 조직 및 인력 감축 등에 대한 자치구청장들의 반대가 예상되며, 시세징수사무소 설치 등에 따른 납세시민의 접근성 저하 등 불편 초래 예상
- 따라서, 시세를 직접 징수하기 위해서는 조직개편 및 징수교부금 보전 등 자치구와 사전협의와 동의를 필수적이므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한 문제로 사료됨

○ 교부기준 개선 효과

(단위 : 백만 원)

| 구분 | 교부대상 시세징수액(A) | 징수교부금 | | 차액 (B-C) |
|-----|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|
| | | 금액 기준 (B=A×3%) | 금액·건수기준(C) (※ 현행) | |
| 합계 | 18,966,700 | 569,001 | 569,001 | - |
| 종로 | 1,068,236 | 32,047 | 22,600 | -9,447 |
| 중구 | 1,845,920 | 55,378 | 35,847 | -19,531 |
| 용산 | 892,720 | 26,782 | 21,227 | -5,555 |
| 성동 | 617,098 | 18,513 | 18,722 | 209 |
| 광진 | 348,635 | 10,459 | 13,758 | 3,299 |
| 동대문 | 469,077 | 14,072 | 16,182 | 2,110 |
| 중랑 | 217,288 | 6,519 | 12,531 | 6,012 |
| 성북 | 322,157 | 9,665 | 14,726 | 5,061 |
| 강북 | 144,302 | 4,329 | 8,793 | 4,464 |
| 도봉 | 164,130 | 4,924 | 9,865 | 4,941 |
| 노원 | 278,601 | 8,358 | 15,006 | 6,648 |
| 은평 | 285,439 | 8,563 | 14,710 | 6,147 |
| 서대문 | 312,577 | 9,377 | 12,387 | 3,010 |
| 마포 | 681,445 | 20,443 | 23,116 | 2,673 |
| 양천 | 372,823 | 11,185 | 16,346 | 5,161 |
| 강서 | 673,311 | 20,199 | 26,998 | 6,799 |
| 구로 | 443,394 | 13,302 | 18,828 | 5,526 |
| 금천 | 393,819 | 11,815 | 15,171 | 3,356 |
| 영등포 | 1,581,470 | 47,444 | 38,639 | -8,805 |
| 동작 | 322,355 | 9,671 | 13,750 | 4,079 |
| 관악 | 276,476 | 8,294 | 14,554 | 6,260 |
| 서초 | 1,922,175 | 57,665 | 46,192 | -11,473 |
| 강남 | 3,601,864 | 108,056 | 81,106 | -26,950 |
| 송파 | 1,226,559 | 36,797 | 38,762 | 1,965 |
| 강동 | 504,829 | 15,145 | 19,184 | 4,039 |

○ 자치구간 교부금액 격차 완화효과('23년 기준)

- 개선 전 : (최소) 강북 4,329백만원, (최대) 강남 108,056백만원 → 24.96배
- 개선 후 : (최소) 강북 8,793백만원, (최대) 강남 81,106백만원 → 9.22배

3 | 세제개편 관련 추진 현황

세제과장 : 서은경 ☎2133-3350 세제정책팀장 : 김형구 ☎3352 담당 : 서범하 ☎3354

- ◆ 지방 재정확충 및 최근 국내외 성장 둔화 등으로 인한 세입확보 불안정성 해소와 지방세제 운영상 불합리한 제도 개선을 위한 세제개편 추진

□ 사업개요

- 국세와 지방세의 합리적 조정방안 등 정부건의로 지방재정 확충 추진
 - 지자체의 복지수요 등 지출 부담 증가에 대응하기 위한 지방재정 확충 필요
 - 서울시 지방재정의 확충으로 자치구의 재정형평화(조정교부금 등 25.6%) 추진

□ 그간의 추진현황 및 성과

- 세제개편자문단 구성으로 마련된 보유세제개편안 정부 건의 ('22년)
 - 조세분야, 학계 등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세제개편자문단 구성 회의 : '22.2월
 -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주택 보유세 부담 완화를 목표로 4차례 회의
 - ➔ '22. 4. 19. '보유세제개편안'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 정책 건의
 - 정부, 110대 국정과제 중 '안정적 주거를 위한 부동산세제 정상화' 채택
- 지방세제 합리화를 위한 자동차세 주행분 개선 정부 건의 ('23년)
 - '22. 3. 3. 세제개편 자문회의 실시로 자동차세 주행분 개선안 마련 후, '23. 9. 8. 정책토론회 실시로 행안부 및 각 지자체의 공론화 분위기 조성
 - ➔ 세제개편안(전국 16개 광역지방자치단체 동의) 대정부 건의 : '23. 10월
 - (내용) 20년간 정액으로 고정된 자동차세 주행분 중 세수보전분(전국 9,830억원)의 확대된 재정수요를 반영 현실화(전국 4.7조원 확대) 등

□ 향후 추진계획

- 세제개편 자문회의 등을 통하여 지방재정 확충방안 모색 (연중, 수시)
 - ※ '24. 8. 1.(목) 재무국장 주관 외부 전문가 4명 초빙 전문가 자문회의 실시
- 개편방안에 대한 타시도 협력관계 강화, 대정부 및 국회 건의 추진